



대목 굴취이식 활용방안

박 주 하/산림청 산림토목과장

1. 목적

○산림의 형질변경지나 수종갱신 대상지에서 베어낸 나무와 인

공조림지의 밀생 임목중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환경 조립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자원의 활용과

육림 촉진을 도모하고 산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방침

〈표 1〉

구 분	대 상 지	대 상 목	유 의 사 항
형질변경지	타용도전용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협의(의제)된 임지중 형질변경 확정 구역내	조경가치가 있는 모든 수종	수목굴취를 위하여 형질 변경구역의 확대나 구역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
수종갱신지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허가 또는 영림계획사업 신고된 임지	산림경영상 존치하여야 할 우량목을 제외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수종갱신을 빙자하여 갱신 대상지가 아닌 곳을 선정하거나 산림경영상 존치되어야 할 유용목을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인공조림지	기왕 조립지중 육림차원에서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지로서 -수형과 수목의 크기가 조경수나 관상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굴취 및 운반이 용이하며 -토질이 분뜨기가 될 수 있는 지역	솎아낸 수목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존치할 조립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선정

〈표 2〉

구 분	국 유 립	민 유 립
형질변경지	수허가자의 신청지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적정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확정	산주(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군수(녹지과장·산림과장)가 현지 확인후 확정
수종갱신지	관리소장이 대상지를 확인하여 결정	"
인공조림지	"	"

※ 수목굴취로 인한 물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론기관·환경단체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물의가 없도록 조치

○산림경영상 폐기될 수목의 적극적 활용

- 각종 산림의 형질변경지에서 제거될 수목
- 수종갱신 대상지에서 정리 작업시 벌채될 수목
- 기왕 조림지의 밀생임분에 서 속아낼 대상목

○대상목은 경관 및 환경파괴 등 물의가 없도록 엄선

○굴취적지는 임지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

3. 추진요령

가. 대상지 및 대상수목

(표 1 참조)

나. 대상지 확정

(표 2 참조)

다. 굴취 제한지

○병해충 피해지

형질변경지나 수종갱신지라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에서는 굴취·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미리 수간주사 등의 방법

으로 완전 구제했거나 인근에 가식하여 구제한 후 道산림환경연구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경관 보전지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기타 경관 보전상 굴취함이 부적합한 지역. 다만, 형질변경이 허가된 곳이나 인공조림지는 예외로 한다.

○급경사지 및 석력지 등

나무 생육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임분구성이 어렵고 또한 수목굴취나 운반, 복구 등의 조건이 열악하며 경관이나 임지 보전상 굴취함이 부적합한 급경사지 및 석력지 등. 다만, 형질이 변경될 곳은 예외로 한다.

라. 굴취목 선정 및 표시

(표 3 참조)

마. 굴취방법

○분직경 : 근원경의 3~5배

(수종에 따라 5~10배)

○분의 깊이 : 근원경의 3~5배

○분은 새끼로 묶거나 마대등

으로 감싸 깨어지지 않도록 함.

※ 기타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수목굴취 요령을 참고

바. 인력 활용(기능인 작업단 활용방안)

산림사업이 없는 기간(동절기)에 기능인 작업단을 활용하므로서 작업단의 고용 안정 도모

다만, 대목 굴취·이식에 따른 뿌리돌림 등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수목굴취 전문가와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사. 임지별(국·민유림)

추진요령

○국유림(영림서 관리소)

• 굴취목의 수요, 굴취 인력, 작업량 등을 감안,

다음 방법으로 추진

① 직영사업

• 각 관리소별로 작업단을 활용·이용 가능한 임지에 대하여 최대한 실시

• 굴취목은 관내 산림 또는 시설부지중 식재적지는 최대한 이식(정식)토록 하고 그의 대상량은 야산 또는 포지에 가식하여 육성

〈표 3〉

구 분	굴취목 선정	굴취목 표시
형질변경지	조경가치가 있는 모든 수목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어 둔다.
수종갱신지	산림경영상 존치하여야 할 우량목을 제외한 베어낼 나무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고, 존치하여야 할 유용목은 노란색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인공조림지	임상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열식굴취 : 1열 굴취 1열 존치 1열 굴취 2열 존치 ○교호굴취 : 식재열별로 서로 어긋나게 선정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어 두되 다만, 열식굴취인 경우 존치열에는 첫 나무에만 노란색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굴취열에도 첫 나무에만 흰색 "천" 또는 "비닐"로 표시토록 한다.

※ 굴취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다.

※ 인공조림지에서 굴취할 경우는 굴취하여도 기존의 주변 입목이나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선정(임상파괴방지)한다.

하였다가 매각 또는 식재 활용

- '96 이식 대상지는 '95. 12. 중
에 대상지 선정을 하였다가 내년도
출근기에 이식작업 실시

② 굴취대상 입목매각 : 영림서
관리소장이 대상지 선정 및 매각
조사후 매각

- 민유림(시·군, 임협)
 -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
장·군수(녹지과장, 산림
과장) 허가 및 지도·감독
 - 산주가 자본, 기술, 시간
이 없어서 스스로 하지 못
하는 경우 임협에서 대행

※ 임협에서 작업단, 양묘장,
직판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주
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생
산·운반·판매등 자체계획 수립
추진

4. 적지 복구

경관의 저해 및 산림의 형질변
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굴
취·반출하되 굴취 후에는 "산림
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굴취직후 완벽하게 복구하
여 경관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굴취목 반출

○굴취자가 굴취한 수목을 반
출하고자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굴취적지가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생산 확인표」를 발부
한다(수목굴취 요령 참조)

○포지에 가식하였다가 반출하
는 경우 필요하다면 「관상수목 자

가생산 확인서」를 읍·면·동에
서 발급한다. (내무부 예규 참조)

6. 기타

본 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수목굴취 요령(산림청예
규 제376호)에 의한다.